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091

발의연월일: 2025. 4. 24.

발 의 자:김민석 • 윤준병 • 윤종군

서삼석・김 현・이원택

김남근 • 박지원 • 김기표

이재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구급차, 항공기,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 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,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 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7조 의2제1항제4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7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 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	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			
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	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		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	
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・점유				
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				
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				
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				
다.	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4의2.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			
	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			
	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			
	<u>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</u>			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	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	